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주 개 443.2 - 908 (전화번호 267 ...)	전 결 규정	4 조 7항 부시장 전결사항		
처리기간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83. 7. 15</div>				
시행일자				83. 7.	
보존연한				영 구	
보 조 기 관	부시장 전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결재 1983. 7. 15 부시장 </div>	협	법무담당관 심사필 (고시안심사)	
	건설관리국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고시제 362호 </div>	개량계획계장 개량 2계장
	주택개량과장				
기안책임자	주택개량 이재명	조	개량 2계장		
경 유 수 신 참 조	주 안 참 조	발 신	시 장	통 계	
제 목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시장)검정 고시				
제 1 안 (내부검재)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83호 (81. 10. 23)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계획 검정된 천호1구역의 사업계획과 건설부고시 제343호 (78. 11. 11.)로 사업계획 변경 검정된 봉천4구역내 계획도로 (소토3통5호선)와 서고시 51호 (82. 2. 4)로 사업계획변경 검정된 신길2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시장)에 대하여 별첨과 같은 변경 사유가 있어					
정서					
2. 천호1구역의 사업계획과 봉천4구역내 계획 도로는 도시재개발법 제5조, 동법 시행령5조 (경미한 재개발사업 계획의 변경)및 동령 제58조 (권한 위임)로, 신길2구역내 도시계획시설(시장)은 도시재개발법 제5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권한위임)에 의거 별첨 도시와 같이 변경 검정 고시 하고자 합니다.					
관인					
3. 고 시 내 역					
발송					
가. 사업명칭 :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시장)					
나. 고시방법 : 고시문을 관시보에 게재					

다. 고시내용 : 고시안 참조

- 첨부
1. 사업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시장)변경 결정 조서 3부.
 2. 사업계획 및 시장변경 도면 >부
 3. 사업계획 및 시장변경 ~~도면~~ 1부
 4. 도시계획변경 주변외견 정리 공고문 사본 1부
 5.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회의록 (83년 제정자 회의) 1부
 6. 봉천1구역내 소토변경 요청서 입건서류

허위심사	1983.7.11. 제 162 호
담당관	법제제장 법무담당관

제 2 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 결정"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83호 (81. 10. 23), 건설부 고시제343호 (78. 11. 11) 서고시 제51호 (82. 2. 4)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된 천호1구역 봉천4구역, 신길 2구역에 대하여
2. 천호1구역과 봉천4구역은 도시재개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경미한 재개발사업 계획의 변경) 및 제58조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신길2구역은 도시재개발법 제5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권한위임)의 규정에 의거 아태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 결정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관할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3. 7. .

서울특별시 장

가. 내 역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천호1구역	영동구천호동 사6-1, 사8-1 번지 앞대	31,733	-	-	사업계획변경
봉천4 "	관악구봉천동 산101-112"	243,010	-	-	6m소로 위치변경
신길2 "	영등포구신길동 236-1, -15외 11필지	1,578.72	61.05	1,639.77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
나. 도면 및 작성 (생략)					
제 3 안					
수 신 총무처 장관 (공보관)					
제 목 관 (시)보 게재 의뢰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계획 및 재개발구역내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별첨 고시문과 같이 고시하였기 관(시)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고시문 사본 1부 ^{1부} <u>부시청</u>					
제 4 안					
수 신 건설부장관					
참 조 도시개발과장					
제 목 동 건					
1. 건설부 고시 제55호 '81. 2. 20) 및 동고시 제470호 (73. 12. 1) 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천호1구역, 봉천4구역에 대하여					
2. 천호1구역은 사업계획을 봉천4구역은 계획도로 (소로3류 5호선) 를 신길2구역은 재개발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별첨고시문 및 도서와 같이 변경 결정고시 하였기 보고 합니다.					
제 5 안					
수신처 수신처 참조					
참 조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제 목 동 건					
1.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인 천호1구역의 사업계획과 봉천4구역내 계획 도로일부와 신길2구역의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할것.(하시기 바랍니다)
(아오니)

2. 관할구청장은 관계도서를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변경된 구역내 도시계획 확인원증명,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것이며

3. 고시문 사본을 통반장을 통하여 구역내 토지및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전달함것.

첨 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도면 및 조서 1부. 끝.

수신처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강동, 관악, 영등포구청장

결재

변경 사유서

1. 천호 제1구역 사업계획 변경

가. 서울시 고시제 383호 (81. 10. 23)로 사업계획 결정시는 건축계획을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계획 하였으나

나. 구역내 주변의 영세성으로 단독주택 건립시는 건축비가 과중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아파트 건립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건설업자와 합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재개발사업을 촉진 시키고자 하며

다. 따라서 아파트 건립에 맞도록 사업계획 (공공시설)을 변경 하고자 함.

라. 도시계획법 절차 이행사항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주변외견 정취 공답.

- 서공고 제241호 (83. 5. 3) 83. 5. 3 - 5.16 (14일간) *서울시청*
- 의외 신청 없음.

2) ◦ 서울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83.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 가결

2. 봉천 4 구역

가. 건설부 고시 제343호 (78. 11. 11.)로 사업계획변경 결정시 봉천동 산 101 -112 토지로 6^m도로 (토소3통5호선)가 토지증양으로 결정 되었으나

나. 재개발사업지연으로 인접 산484 -1 토지에 동사업 계획 결정 이후 행위 완화 신청에 외거 신축건물 2동이 건립 관리처분 계획에 지장을 초래 하여

다. 위 도로를 신축건물 옆으로 위치변경하여 관리처분 계획에 토지이용을 합리화 시키고써 산101 -112 토지소유자로 부터 요청이 있으며 변경 계획선에 저촉되는 토지소유자로 부터 계획선 변경의 동의를 득 하였

으므로

다.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조 경미한 사업계획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 민원을 해결코자 함.

3. 신길2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시장)변경

가. 서울시 고시 제51호 (82. 2. 4)로 기존 시장에 대하여 사업계획으로 시장을 관리처분된 신길동 235 -2의 9필지 (1,579M)에 결정하였으나

나. 82. 8. 7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부합되는 시장 건물은 신길동 235 -2의 3필지에는 대지폭이 좁아 사실상 건축할수 없어 재개발 사업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다. 신길동 235 -2의 시장 용지는 폐지하고 시장건축이 가능한 신길동236-15호로 시장 변경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라. 도시계획법 절차 이행사항

1) 도시계획 변경안 주변 의견 청취 공람.

- 서공고 제241호 (83. 5. 3)기간 83. 5. 3 - 5. 16(14일간)
- 이의 신청 없음.

2)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83. 7. 1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가결

결재
15

사업계획 변경 조서

1. 천호 제1구역

가. 계획면적

위 치	면 적	비 고
강동구 천호동 산6-1, 산8-1번지 일대	31,733 ^{M²}	

198.1
부시장

나. 토지이용 계획

용 도	면 적 (m ²)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도 로	7,437	3,263.5	△ 4,173.5	
어린이 공원	495	-	△ 495	
노 인 정	165	-	△ 165	
적 환 장	165	-	△ 165	
택 지	23,121	28,469.5	+ 5,348.5	
계	31,383	31,733	350	

다. 가로조서(변경)

구분	가 로 명	시 점	종 점	폭 (m)	연장 (m)	비 고
기정	소로3류1호선	천호동 18-150	천호동 18-49	6	192	
기정	3류2호선	" 산6-1	" 산8-1	6	400	폐지
변경	3류2"	" 21-142	" 425-8	6	350	
기정	3류3"	" 산6-1	" 산6-1	6	175	폐지

사업계획 변경 조서

1. 천호 제1구역

가. 계획면적

위 치	면 적	비 고
강동구 천호동 산6-1, 산8-1번지 일대	31,733 ^{m²}	

1981. 1. 1
부시장

나. 토지이용 계획

용 도	면 적 (m ²)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도 로	7,437	3,263.5	△ 4,173.5	
어린이 공원	495	-	△ 495	
노 인 정	165	-	△ 165	
적 환 장	165	-	△ 165	
택 지	23,121	28,469.5	+ 5,348.5	
계	31,383	31,733	350	

다. 가로조서(변경)

구분	가 로 명	시 점	종 점	폭 (m)	연장 (m)	비 고
기정	소로3류1호선	천호동 18-150	천호동 18-49	6	192	
기정	3류2호선	" 산6-1	" 산8-1	6	400	폐지
변경	3류2"	" 21-142	" 425-8	6	350	
기정	3류3"	" 산6-1	" 산6-1	6	175	폐지

기정	소로3류4호선	천호동 243-177	천호동 18-4	6	90	폐지
변경	3류4"	" 243-177	" 산6-1	6	93	
기정	3류5호선	" 243-177	" 23-2	6	250	폐지
"	3류6"	" 산8-1	" 산8-1	6	24	폐지
"	3류7"	" 21-68	" 18-41	6	28	
"	4류1"	" 산8-1	" 18-181	4	27	폐지
"	4류2"	" 산8-1	" 산8-1	4	23	폐지

2. 봉천 제4구역

가. 계획면적

위 치	면 적	비 고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일대	243,010 ^(㎡)	

나. 토지이용 계획

용 도 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243,010	243,010		
택 지	161,151	162,163	12	
도 로	36,276	36,264	12	
녹 지	31,806	31,806		
공 원				
기타(학교)	12,777	12,777		

다. 가로조서(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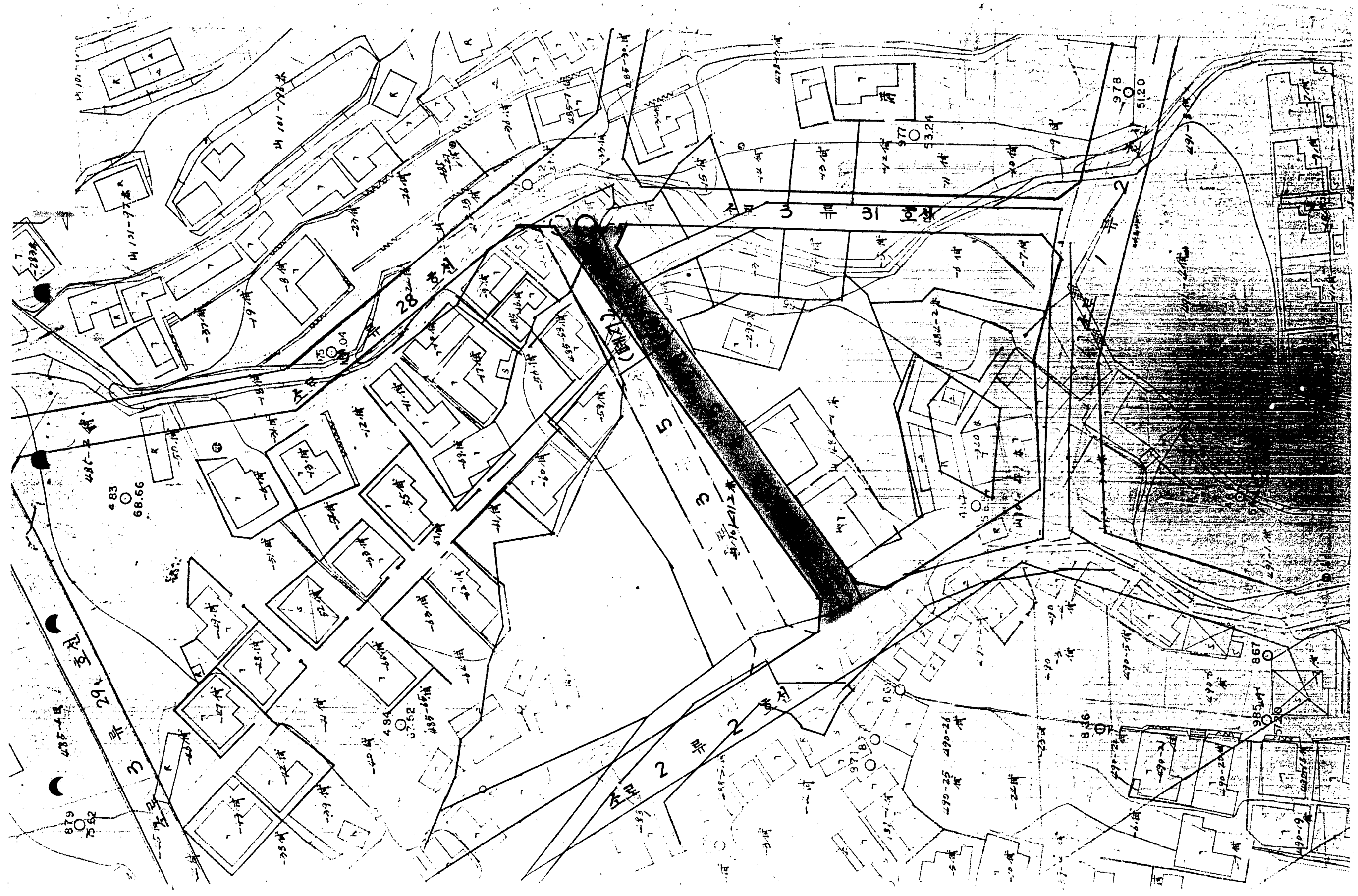
구 분	노 선 명	시 점	종 점	폭 (m)	연 장 (m)	비 고
기정	소로3류5호선	485-15	825-1	6	77	폐지
변경	"	"	"	6	75	

3. 신길 제2구역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 결정조서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영동포구 신길동 235-2외3필지 " 236-9외5필지(가)(나)	1,578.72	신길동235-2외3필지 236-9외5필지(가)때지
변경	영동포구 신길동 236-9외5필지(나) " 236-1외2필지 " 236-15외3필지	1,639.77	236-1외2필지 및 236-15외3필지신설
① 종괄	영동포구 신길동 236-1외2필지 " 236-15외3필지	61.05	

1985. 7. 3
쿠시장



2838

485-15

485-2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485-10

485-11

485-12

485-13

485-14

485-15

485-16

485-17

485-18

485-19

485-20

485-21

485-22

485-23

485-24

485-25

485-26

485-27

485-28

485-29

485-30

485-31

485-32

485-33

485-34

485-35

485-36

485-37

485-38

485-39

485-40

485-41

485-42

485-43

485-44

485-45

485-46

485-47

485-48

485-49

485-50

485-51

485-52

485-53

485-54

485-55

485-56

485-57

485-58

485-59

485-60

485-61

485-62

485-63

485-64

485-65

485-66

485-67

485-68

485-69

485-70

485-71

485-72

485-73

485-74

485-75

485-76

485-77

485-78

485-79

485-80

485-81

485-82

485-83

485-84

485-85

485-86

485-87

485-88

485-89

485-90

485-91

485-92

485-93

485-94

485-95

485-96

485-97

485-98

485-99

485-100

485-101

485-102

485-103

485-104

485-105

485-106

485-107

485-108

485-109

485-110

485-111

485-112

485-113

485-114

485-115

485-116

485-117

485-118

485-119

485-120

485-121

485-122

485-123

485-124

485-125

485-126

485-127

485-128

485-129

485-130

485-131

485-132

485-133

485-134

485-135

485-136

485-137

485-138

485-139

485-140

485-141

485-142

485-143

485-144

485-145

485-146

485-147

485-148

485-149

485-150

485-151

485-152

485-153

485-154

485-155

485-156

485-157

485-158

485-159

485-160

485-161

485-162

485-163

485-164

485-165

485-166

485-167

485-168

485-169

485-170

485-171

485-172

485-173

485-174

485-175

485-176

485-177

485-178

485-179

485-180

485-181

485-182

485-183

485-184

485-185

485-186

485-187

485-188

485-189

485-190

485-191

485-192

485-193

485-194

485-195

485-196

485-197

485-198

485-199

485-200

485-201

485-202

485-203

485-204

485-205

485-206

485-207

485-208

485-209

485-210

485-211

485-212

485-213

485-214

485-215

485-216

485-217

485-218

485-219

485-220

485-221

485-222

485-223

485-224

485-225

485-226

485-227

485-228

485-229

485-230

485-231

485-232

485-233

485-234

485-235

485-236

485-237

485-238

485-239

485-240

485-241

485-242

485-243

485-244

485-245

485-246

485-247

485-248

485-249

485-250

485-251

485-252

485-253

485-254

485-255

485-256

485-257

485-258

485-259

485-260

485-261

485-262

485-263

485-264

485-265

485-266

485-267

485-268

485-269

485-270

485-271

485-272

485-273

485-274

485-275

485-276

485-277

485-278

485-279

485-280

485-281

485-282

485-283

485-284

485-285

485-286

485-287

485-288

485-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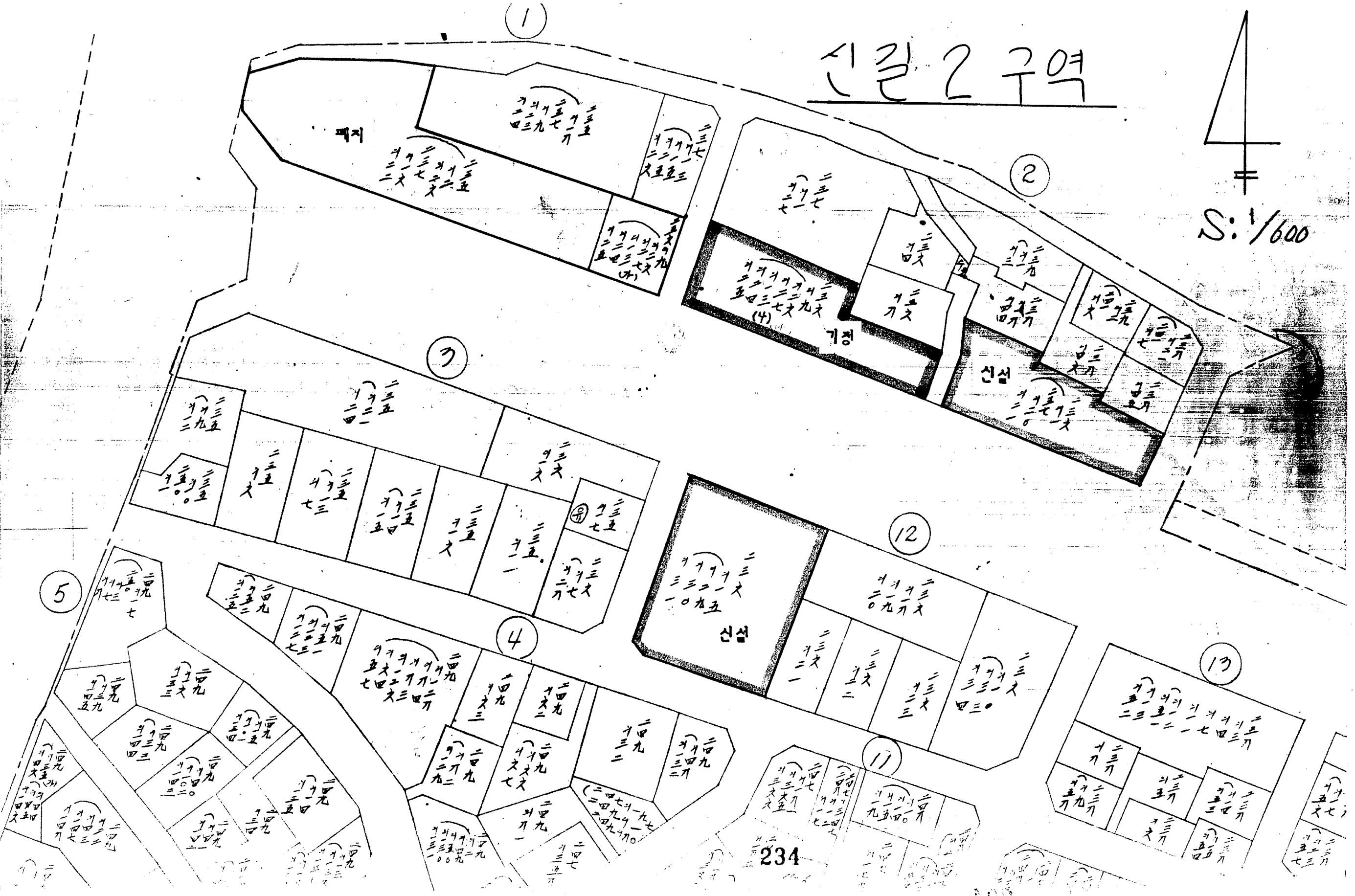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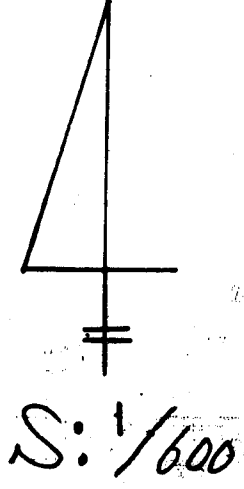
485-290

485-291

485-292

485-293

신원 2 구역



'83. 7. 1

도 시 계 획 위 원 회 회 의 록

(계 3차 위원회 4개 본회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83. 7. 1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의 의 록

(제 3차 의결의록 개본회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 1. 일 시 : '83. 7. 1. 15:00
- 2. 장 소 : 소 회 의 실
- 3. 안 건 : 도시계획 용도지구 (미관지구) 결정 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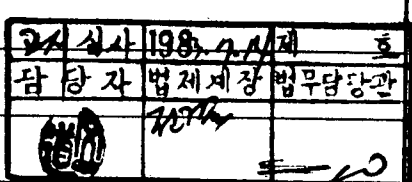
- 4. 참석도원 : 위원장 (대리) 안상연
- " " 이광노
- " " 김영만
- " " 신동호
- " " 김영현
- " " 김안계
- " " 오위영
- " " 도희웅
- " " 이종구
- " " 최중현
- " " 김인식
- " " 김인동
- " " 이 동
- " " 최종무
- " " 이찬수
- 간 사 도시계획과장
- 서 기 도시행정계장

- 5. 불참도원 : 위원장 이상연
- " " 이 동 백
- " " 유근완
- " " 김진오
- " " 장현익

6. 기타참석 : 책말과장, 구원장리과장, 가로계획계장.

제 36안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	
	◦ 신길동 시장	가
제 37안	주거개발 재개발사업 계획 결정	
	◦ 천호 1구역	가
제 38안	도시계획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변경 결정	
	◦ 반포지구 (반포동 1141외 1필)	조건부 가
	◦ 서초지구 (서초동 85-3 외 8필)	가
	◦ 서초지구 (서초동 167타 외 16필)	가
	◦ 이수지구 (방배동 772-3)	부
	◦ 반포지구 (반포동 30부락)	가
제 39안	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 결정	
	◦ 청량미 동부역 광장	가
제 2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 결정	
	◦ 원서공원	가
제 5안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	
	◦ 상문 고등학교	가
제 13안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우수지, 녹지, 공원) 결정 및 변경 결정	보
제 18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	
	◦ 방화동 168일대	수정 가 (1차 검토)
제 22안	도심지 재개발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 조정	가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자기443,2-210	(전화번호 720-2704)	건설규정 4 조 1항 부시장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83, 7, 17		
보존연한			
보조기관	부시장	전결	협법무담당관(도시안심사) 자기발행정계장: 조경 자기발사업2계장: 김
	도시계획국	김창영	
	자기발과장	김창영	
기안책임자	김창영 83, 7, 15		210 고시제 36호
경유	수신	발신	통제
	가안참조	시장	
제목	도림구역 제11지구 자기발사업 시행인가		
(제1안) 내부 결재			
1 건설부고시 제367호(73,9,6)로 자기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 제76호(77,4,3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26호(82,8,16)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림구역 제11지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중구서소문동37번지 서울지방번호사회 회장 이병호로부터 자기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2 도시재개발법제15조규정에 이거 서울특별시공고 제307호(83, 6, 10)로 시행인가 신청관계서류를 83,6,10- 83,7,10까지 30일간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하였던 바, 공람기관내 의견서등의 제출이 없으므로 도시재 개발법제17조규정에 이거 별안과 같이 조건을 부하여 인가코져 합니다.			
(제2안)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210 심사 1983. 7. 17 제 호 담당자 법제제장 법무담당관	
도림구역 제11지구 자기발사업 시행인가			
1 건설부고시 제367호(73,9,6)로 자기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제76호(77,4,3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26호(82,8,16)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			